휴학·복학·자퇴 및 제적에 관한 규정

제 정 2009. 3.
개 정 2011. 8.
개 정 2013. 2.
개 정 2015. 10.
개 정 2016. 2.
개 정 2016. 11.
개 정 2018. 10.

제1장 총 칙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우송대학교 학칙 제6장의 규정에 의거 휴학, 복학, 자퇴 및 제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장 휴 학

제2조 (구분) ①휴학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.(개정2016.02.01.)

1. 일반휴학: 경제사정, 취업준비, 가정사정 등 학생의 개인 사정에 따른 휴학
2. 질병휴학: 4주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에 따른 휴학
3. 군입대휴학: 병역의무에 따른 군입대 휴학(입영통지를 받은 경우에 한함)
4. 창업휴학: 창업의 준비 및 실행을 위한 휴학
5. 임신·출산·육아휴학: 임신 및 출산, 육아로 인한 휴학(개정2016.11.07.)
6. 직권휴학: 학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학교에서 직권으로 명하는 휴학

제3조 (휴학의 신청) (개정2016.02.01.)①제2조에 따른 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원을 작성하여 관련 서류와 함께 소속학과로 신청하고 학부(과)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② 휴학구분별 첨부되어야 할 관련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일반휴학: 휴학 사유서 및 관련 증빙서류
2. 질병휴학: 4주이상의 병원 진단서
3. 군입대휴학: 입영통지서
4. 창업휴학: 휴학 사유서 및 관련 증빙서류
5. 임신·출산·육아휴학: 병원 진단서 또는 관련 증빙서류(출생신고서, 가족관계증명서 등)(개정 2016.11.07.)
6. 직권휴학: 별도 첨부서류 없음

③ 학교는 필요한 경우 제2항에서 정한 증빙서류 외에 보호자 동의서를 요구할 수 있다.

제4조 (입대휴학) ①병역관계로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휴학신청서에 입영통지서 사본(원본제시)을 첨부하여야 한다.

②일반휴학기간 중 군입대 휴학으로 전환 또는 연장 하고자 할 경우 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.(개정2016.02.01.)

제4조의 2 (직권휴학) 품학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직권휴학은 학생의 소속학부(과)장의 요청으로 총장이 허가 한다.(개정2016.02.01.)

제5조 (휴학기간) ①휴학구분별 휴학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.(개정2016.02.01.)

1. 일반휴학: 1회에 1년 이내로 하여 최대 2회까지로 함.
2. 질병휴학: 1년 이내로 함.
3. 군입대휴학: 입영일로부터 실역복무기간까지로 함.
4. 창업휴학: 1회에 2년 이내로 하며, 일반휴학을 포함하여 최대 4년을 초과할 수 없음. (수정2017.03.13.)
5. 임신·출산·육아휴학: 1회에 6개월 또는 1년 이내로 함.(개정2016.11.07.)
6. 직권휴학: 1회에 6개월 또는 1년 이내로 하여 최대 2회까지로 함. 다만, 외국인유학생의 경우에 한하여 최대 3회까지로 함(2018.10.29.)

②휴학중인 자가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서 정한 휴학기간 내에서 휴학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당초 휴학기간 만료 전에 휴학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.(개정2016.02.01.)(개정2018.10.29.)

③제1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군입대자의 경우 복학시기가 학기개시 이후 인 경우 그 당해 학기까지를 휴학 기간으로 할 수 있다.(개정2016.02.01.)

④(삭제2016.02.01.)

⑤2010학년도이후 신입생부터는 여름학기 또는 겨울학기 이수 후 휴학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6조 (휴학시기 및 제한) ①휴학의 신청 시기는 여름학기 또는 겨울학기 종료 후부터 다음 학기 개강 전까지로 하되 세부일정은 본교 학사력으로 한다. 다만, 기간 경과 후 휴학은 총장이 허락한 자에 한하여 허가한다.(개정2016.02.01.)

②신입학 및 편입학 첫 학기에는 원칙적으로 휴학을 허가 하지 않는다. 다만, 제2조제1항의 제2호, 제3호, 제4호, 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휴학을 허가할 수 있다.(개정2016.02.01.)

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기 개강 후 병역의무로 인하여 휴학하는 경우에는 입대일자가 수업 당해 학기 중인 자에 한하여 허가한다.(신설2016.02.01.)

제3장 복 학

제7조 (복학원)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나 휴학사유가 소멸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복학원과 함께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하여야 한다.(개정2016.02.01.)

1. 군입대휴학자가 전역한 경우에는 전역사실이 명시된 서류 또는 전역증
2. 군입대휴학자가 귀향조치 받았을 경우에는 귀향증명서
3. 기타 일반휴학자 등이 휴학기간 중 휴학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

제8조 (복학시기) ①복학시기는 매학기 개강이전으로 하되 세부 일정은 학사력으로 정한다. (개정2016.11.07.)

②학칙 제23조제2항에 따라서 휴학기간 만료전 조기에 복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복학 할 수 있다.(개정2016.02.01.)

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등록기간 내에 휴학사유가 만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, 2학기는 학기 개시 후 4주 이내에, 여름·겨울학기는 학기 개시 후 4일 이내 복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군입대휴학자가 귀향조치를 받았을 경우에는 귀향 후 10일 이내에 복학하여야 한다.(개정2016.02.01.)

제9조 (복학자의 납입금) 복학자의 납입금은 학칙 제57조 및 등록금 징수 규정 등에 따른다.(개정2016.02.01.)

제4장 자퇴 및 제적

제10조 (자퇴) 학칙 제24조에 의거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보호자 연서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11조 (제적) ①학칙 제8조 제4항 및 제25조, 제54조, 제55조, 제56조 중 제적에 해당되는 자는 학과 단위위원회 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제적 조치를 할 수 있다.(개정2016.02.01.)

②제1항에서 정한 제적의 처리 시기는 1학기 또는 2학기 수업일수 3분의 1 경과시점으로부터 4주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③학칙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미등록자 중 등록금 분할 납부신청자 또는 납부유예신청자의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별도로 할 수 있다.

④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적처리 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다.

제5장 기타

제12조 (기타사항) 휴학, 복학, 자퇴 및 제적에 관하여 학칙과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적용의 특례)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11월 07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적용의 특례) 이 규정 시행일 이전 휴학자 중 육아로 인한 휴학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제2조 제5호의 임신·출산·육아휴학으로 적용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적용의 특례) 제5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의 개정사항은 2018년 8월 1일 이후 휴학자부터 적용한다.